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7호”를 “제1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제8호”로 하고 동항 나호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따로 과세한다.</p> <p>1-7. (생략) <u>(신설)</u></p> <p>②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u>제1항 제1호의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가. (생략)</p> <p>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한 경우(이하 생략)</p> <p>다. (생략)</p> <p>제3조-제5조 (생략)</p>	<p>.....</p> <p>.....</p> <p>.....</p> <p>.....</p> <p>1-7. (현행과 같음)</p> <p>8. <u>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 및 토지</u></p> <p>②.....</p> <p>..... <u>제1항 제1호 및 제8호</u>.....</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주택 개량(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u></p> <p>.....</p> <p>다. (현행과 같음)</p> <p>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p>